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21 선고 2020나33343 판결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21 선고 2020나33343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11. 18 선고 2019가단460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일

변론종결 2021. 11. 23.

판결선고 2021. 12. 21.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11. 18. 선고 2019가단460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임야 22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9.95㎡를 철거하고 그 지상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갑 제1, 3, 5호증”을 “갑 제1, 3, 5, 8, 15 내지 17호증”으로, 제4면 제18행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유하였는데도 매수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대현, 판사 이재민, 판사 고병용

별지